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1419 |
|----------|------|

2013년 7월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19일, 주영길 의원(찬성자 16명)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7월 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영길 의원)

가. 제안 이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를 근거로 창의적인 제안, 사업 수행 등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단체 그리고 본청과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창의상을 수여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직원 포함)은 ‘자기시정(自己是正)’에 주안점을 둘 수 있고, 서울시민은 ‘공공서비스 수요자로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에 중점을 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을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각각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내용

- 1) 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을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분하고,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각각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2)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5조).
- 3)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국민제안규정」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결과(2013.6.24 ~2013.7.1) : 제출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서울창의상 수여대상 관련(안 제3조)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서울창의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창의제안부문 2. 제안실행부문 3. 혁신시책부문 4. 예산절감부문 5. 지식경영부문</p> | <p>제3조(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 및 종류) ① 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은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분한다.</p> |

- 제246회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심의과정에서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직원 포함)은 ‘자기시정(自己是正)’에 주안점을 둘 수 있고, 서울시민은 ‘공공서비스 수요자로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에 중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각각에 대해 별도의 심사과정과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주영길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은 서울창의상 제도의 종류, 시상 시기 등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대신, 수여 대상을 시민과 공무원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명시하고자 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경우 보다 명확성이라는 법원칙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②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또는 수상대상자 중 제안과 실행을 연계하여 최고의 성과를 거양한 자에게는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한다. | 제3조(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 및 종류) ④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또는 수상대상자 중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각각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할 수 있고, 시상주기는 연1회로 한다. |

- 개정안은 부문별 수상자 또는 수상대상자 중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서울창의대상을 각각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창의적인 제안 또는 사업 수행 등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가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바, 각각 규제개혁 등 시정발전에 대한 참여기회, 민원서비스 제고 및 효과에 대한 시각의 차이, 자발성과 기회비용 발생 등을 감안할 때 시민과 공무원은 상당히 다른 환경과 상이한 가치관을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하겠음.
-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시민과 공무원을 나누어서 시정발전을 위한 공적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서울창의대상을 그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심사기준 관련(안 제10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 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및 <u>시민편익 증진</u>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기준) ----- ----- ----- -----, <u>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u> 등을-----. |

- 개정안은 서울창의상 수여를 위한 심사기준에 있어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외에 시민편익 증진을 삭제하고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등을 추가 하였음.
-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시민과 공무원은 처한 환경과 시각이 다른 만큼 그 공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각각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다. 기타 (안 제11조, 제14조)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p>제11조(의견조회) 시장은 제10조의 심사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p>제14조(보상) 시장은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p> |

- 개정안은 심사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전시 등을 위해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제안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로, “직원”을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또는 시 투자·출연기관소속 직원”을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은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 :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연2회)
 2. 예산절감부문 : 창의적 제안 및 예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감·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연1회)
 3. 지식경영부문 : 시정연구 논문 성과가 우수한 시민(연1회)
- ③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 :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

2. 제안실행부문 :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
 3. 혁신시책부문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일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업무효율을 높인 공무원 등(연2회)
 4. 예산절감부문 :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연1회)
 5. 지식경영부문 : 학습동아리·시정연구논문(연2회), 공무원직접 수행 학술용역(연1회)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
- ④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또는 수상대상자 중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각각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할 수 있고, 시상주기는 연1회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11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종전의) 제6조제5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가”를 “민간전문가”로 한다.

(종전의) 제9조제3항 중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을 “서울 창의상 시상부문 관련”으로 한다.

(종전의) 제11조 중 “및 시민편익 증진”을 “,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견조회) 시장은 제10조의 심사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중 “제3조”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보상) 시장은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서울 창의상 포상금(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 수상대상 | 부문별 | | 포 상 금 | | |
|-------------------------|------------------|-----------------------------------|---------------------------|-------|-------|
| | | | 최우수 | 우 수 | 장 려 |
| 시 민 | 창의제안 | | 5,000 | 3,000 | 2,000 |
| |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 | 3,000 | 2,000 | 1,000 |
| | 서울창의 대 상 | | 10,000 | | |
| | 예산절감 |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 | |
|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창의제안 | | 3,000 | 2,000 | 1,000 |
| | 제안실행 | | 3,000 | 2,000 | 1,000 |
| | 혁신시책 | | 5,000 | 3,000 | 2,000 |
| | 지식 경영 | 학 습 동아리 | 3,000 | 2,000 | 1,000 |
| | | 시정연구 논문 공무원직접 수행학술 용역 | 3,000 | 2,000 | 1,000 |
| | 서울창의 대 상 | | 10,000 | | |
| 시 공무원 | 예산절감 |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 | |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제2조 2호의 “채택제안”의 경우 200,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적인 제안, 사업수행 등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u>시민·단체</u>,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u>직원</u>에게 수여하는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_____ _____ -----<u>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u>,----- _____서울특별시 투자 출연기관 <u>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u> _____ -----.</p> |
|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안"이란 시민,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또는 <u>시 투자·출연기관소속 직원</u>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p> <p>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p> <p>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p> <p>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p> <p>마.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p> |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_____<u>공무원 등</u>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2.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p> | <p>2. (현행과 같음)</p> |
| <p>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u>서울창의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창의제안부문</u> 2. <u>제안실행부문</u> 3. <u>혁신시책부문</u> 4. <u>예산절감부문</u> 5. <u>지식경영부문</u> <p>② <u>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또는 수상 대상자 중 제안과 실행을 연계하여 최고의 성과를 거양한 자에게는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한다.</u></p> <p>③ <u>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창의제안부문 :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u> 2. <u>제안실행부문 :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u> 3. <u>혁신시책부문 : 일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업무효율을 높</u> | <p>제3조(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 및 종류) ① <u>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은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삭제) <p>② <u>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창의제안부문 :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연2회)</u> 2. <u>예산절감부문 : 창의적 제안 및 예산 낭비사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감·수입 증대에 기여한 시민(연1회)</u> 3. <u>지식경영부문 : 시정연구 논문 성과가 우수한 시민(연1회)</u> <p>③ <u>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창의제안부문 :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u> 2. <u>제안실행부문 :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u> 3. <u>혁신시책부문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u> |

| 현 행 | 개 정 안 |
|--|--|
| <p>이거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p> <p>4. 예산절감부문 : 창의적 제안 및 예산 낭비사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감·수입 증대에 기여한 시민,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p> <p>5. 지식경영부문 : 학습동아리, 시정연구 논문,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성과가 우수한 시민,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④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세부 시상분야, 시상인원은 시장이 정한다.</p> <p>제4조(시상 시기) 시상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1. 창의제안부문 : 반기별(연2회)</p> <p>2. 제안실행부문 : 반기별(연2회)</p> <p>3. 혁신시책부문 : 반기별(연2회)</p> <p>4. 예산절감부문 : 연1회</p> <p>5. 지식경영부문 : 학습동아리·공무원 시정연구 논문(연2회), 시민 시정연구 논문·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연1회)</p> <p>6. 서울창의대상 : 하반기(연1회)</p> | <p>를 거두거나, 일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업무효율을 높인 공무원 등(연2회)</p> <p>4. 예산절감부문 :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연1회)</p> <p>5. 지식경영부문 : 학습동아리·시정연구 논문(연2회),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연1회)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p> <p>④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또는 수상대상자 중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각각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할 수 있고, 시상주기는 연1회로 한다.</p> <p>⑤ (현행 제4호와 같음)</p> <p><삭제></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수상자 선정) ①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 수상자는 <u>제6조</u>에 따른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p> <p>②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상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p>제4조(수상자 선정) ①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 수상자는 <u>제5조</u>에 따른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p> <p>②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상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 <p>제6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①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후보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및 시상등급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서울창의상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u>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 <p>제5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u>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p>2.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u>전문가</u></p> <p>3. 시의 국장급, 자치구의 부구청장급 공무원</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안·혁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9조(실무위원회 설치·운영)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대상 심의 및 추천</p> <p>2.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p> | <p>2. <u>간전문가</u></p> <p>3. (현행과 같음)</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제6조(회의)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현행과 같음)</p> <p>제8조(실무위원회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사항</p> <p>③ 실무위원회는 <u>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u>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10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및 <u>시민편익 증진</u>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2조(시상등급) 서울창의상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u>제3조</u>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 다만, 서울창의대상은 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p> | <p>③ _____ <u>서울창의상 시상부문 관련</u></p> <p>_____</p> <p>_____</p> <p>_____</p> <p>제9조(수당)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심사기준) _____</p> <p>_____</p> <p>_____, <u>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u> 등을 _____.</p> <p>제11조(의견조회) 시장은 제10조의 심사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12조(시상등급) _____</p> <p>_____ <u>제3조</u></p> <p><u>제항 및 제항의</u></p> <p>_____</p> <p>제13조(부상 등) (현행과 같음)</p> |

| 현 행 | 개 정 안 |
|---|---|
| <p>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포상금은 별표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p> <p>③ 수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포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p> | <p><u><신설> 제14조(보상) 시장은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u></p> |

| 현 행 | 개 정 안 |
|-----|-------|
|-----|-------|

[별 표]
서울 창의상 포상금(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 부문별 | 수상대상 | 포 상 금 | | | |
|------------------|------------------------------------|-----------------------------------|-------|-------|-------|
| | | 최우수 | 우 수 | 장 려 | |
| 창의제안 | 시 민 | 5,000 | 3,000 | 2,000 | |
| |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3,000 | 2,000 | 1,000 | |
| 제안실행 |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3,000 | 2,000 | 1,000 | |
| 혁신시책 |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5,000 | 3,000 | 2,000 | |
| 예산절감 | 시 민 시 공무원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 | | |
| 지 식 경 영 | 학 습 동아리 |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3,000 | 2,000 | 1,000 |
| | 시정연구 논문,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시 민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3,000 | 2,000 | 1,000 |
| 서울창의 대 상 | 시 민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10,000 | | | |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제2조 2호의 “채택제안”의 경우 200,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별 표]
서울 창의상 포상금(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 수상대상 | 부문별 | 포 상 금 | | | |
|---------------------------------------|------------------|-----------------------------------|------------------------------|-------|-------|
| | | 최우수 | 우 수 | 장 려 | |
| 시 민 | 창의제안 | 5,000 | 3,000 | 2,000 | |
| |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 3,000 | 2,000 | 1,000 | |
| | 서울창의 대 상 | 10,000 | | | |
| | 예산절감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 | | |
| 시·자치 구 공무원 투자·출 연기관 직원 | 창의제안 | 3,000 | 2,000 | 1,000 | |
| | 제안실행 | 3,000 | 2,000 | 1,000 | |
| | 혁신시책 | 5,000 | 3,000 | 2,000 | |
| | 지 식 경 영 | 학 습 동아리 | 3,000 | 2,000 | 1,000 |
| | | 시정연구 논문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3,000 | 2,000 | 1,000 |
| | 서울창의 대 상 | 10,000 | | | |
| | 시 공무원 | 예산절감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 | |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제2조 2호의 “채택제안”의 경우 200,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